



# 구보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제1896호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조 레

|                  |                                                   |    |
|------------------|---------------------------------------------------|----|
| ○ 미추홀구 조례 제1994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 2  |
| ○ 미추홀구 조례 제199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 12 |
| ○ 미추홀구 조례 제1996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5 |
| ○ 미추홀구 조례 제1997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 25 |
| ○ 미추홀구 조례 제1998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9 |
| ○ 미추홀구 조례 제1999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1 |
| ○ 미추홀구 조례 제200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3 |
| ○ 미추홀구 조례 제2001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35 |
| ○ 미추홀구 조례 제2002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          | 40 |
| ○ 미추홀구 조례 제2003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 예 규

|                 |                                         |    |
|-----------------|-----------------------------------------|----|
| ○ 미추홀구 예규 제13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 ..... | 49 |
|-----------------|-----------------------------------------|----|

## 입법예고

|                       |                                         |    |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3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 58 |
|-----------------------|-----------------------------------------|----|

## 고 시

|                      |                       |    |
|----------------------|-----------------------|----|
|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53호 | 자적기준점 성과(폐기) 고시 ..... | 65 |
|----------------------|-----------------------|----|

## 공 고

|                       |                                             |    |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31호 |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 68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39호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69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1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70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2호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78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5호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80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52호 | 멸실인정자동차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81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53호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82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62호 |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83 |
|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64호 | 시유재산 변상금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85 |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조 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 (안 제1조~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구성 (안 제4조~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안 제12조~제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임명철회 건의, 주의의무 (안 제14조~제1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4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미추

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

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임명철회 건의)**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서문(제7조제2항 관련)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제2조)
- 예비비 지출 보고 (안 제3조)
- 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안 제4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2.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과 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의 정의 및 처리절차를 정비하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도, 자체우수제안 및 포상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제안의 제출 및 접수(안 제4조~제5조)
- 제안의 심사 및 실시(안 제6조~제12조)
- 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등(안 제13조~제15조)
- 시상 및 보상 등(안 제16조~제20조)
- 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1조~제2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6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구민과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청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청장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④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6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심사기준

**제7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

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의 보완·개선)** 구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1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장 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인천광

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평가
2.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상정 여부
3. 제12조에 따른 재심사
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시상)** ① 자체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2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8조(상여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2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일 제안으로 인하여 「공무원 제안 규정」, 「예산성과금 규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9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특전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

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2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안이유

- 최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역사적 침탈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탐방 지원, 이러닝 활용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사업추진(안 제6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7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도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독도탐방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독도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안이유

-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2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8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당 25개 이상 밀집해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
  -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9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안이유

-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3. 주요내용

-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존속기한 2년 연장(안 제6조의2제1항)
  - 기금 존속기한을 2026.12.31일에서 2028.12.31일로 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200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우선구역의 설치장소 및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5조~제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 제8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2001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남색, 흰색, 적색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벌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 2.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개정(22.06.08) 및 일부개정(26.07.01)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경력유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및 목적·정의 규정 정비 (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정비 (안 제3조~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안 제7조)
-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8조~안 제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2002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장애 및 가족돌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

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2.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및 경력개발 상담
3. 직업교육훈련
4. 취업연계, 일 경험 및 직장 적응 지원
5. 취업 후 사후 관리 및 고용유지 지원
6.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7. 기업 및 사용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
8. 여성의 창업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및 공간 지원
9. 여성경제활동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사업
10.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 예방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자진반납" 및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추가하고, 관련 법인·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2003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를 삭제하고, 제6조(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 원 이내의 교통카드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미추홀사랑상품권
2.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규(발령)****1. 예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

**2. 개정이유**

- 현재 시행 중인 주정차 단속업무 현황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단속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속방법, 단속시간, 현장단속반 운영 관련 세부 사항 정비(안 제5, 6, 12조)
- 주민신고제 단속 조항 신설(안 제9조)
- 문자알림서비스 조항 신설(안 제10조)
- 단속실장의 지정 및 단속 차량 운영 조항 삭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규 제13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수행을 통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및 단속원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단속원칙)** 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흐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단속대상)**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명시된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 및 이면도로 이중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단속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형(이동형) CCTV 단속
2. 고정형 CCTV 단속
3.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에 의한 단속
4.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통보된 증거자료에 의한 단속

**제6조(단속시간)** ① 차량형 CCTV 단속시간은 평일 07:00~21:00, 토·일요일 09:00~17:00까지,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일요일에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단속을 제외한다.

③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에 해당하는 11:00~14:00는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교통흐름을 확보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는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차량형 CCTV 단속)** ①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0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② 단속원은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에 단속스티커를 붙여 작성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석 쪽 출입문 유리 또는 조수석 쪽 유리에 부착하여 단속사실을 안내한다.

③ 표지를 부착한 후 반드시 증거사진을 촬영하되, 해당 차의 차량번호와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 주변 정황 등이 확인되도록 촬영한다.

④ 단속된 차량의 차량번호를 단속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⑤ 단속원은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8조(고정형 CCTV 단속)** ① 고정형 CCTV는 교차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곳을 대상

으로 하여 설치·단속한다.

② 고정형 CCTV 제어장비는 통합관제센터에 두며, 별도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0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제9조(주민신고제 단속)**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야 하며, 단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문자알림서비스)**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조치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형 CCTV 및 고정형 CCTV 단속 시에만 적용한다.

**제11조(주·정차 허용구간 운영)** ①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정차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며, 해당 구간에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이 명시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내한다.

**제12조(현장단속반 운영)** ① 현장단속반은 차량형 CCTV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② 단속조 운영은 3인 1개조를 원칙으로 차량운전자 1명, 단속장비조작 1명, 단속통지교부 및 사진촬영 1명으로 구성하며, 담당자가 매월 별도 근무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실시한다.

③ 현장단속반의 근무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근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단속원의 안전 및 단속효율을 고려하여 호우, 강설, 태풍 등 기상악화 및 각종 특보 발령 시에 지정된 별도의 대기장소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다. 다만,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현장단속원은 대직 시 대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며 주말에 한하여 월 1회 대직이 가능하다.

**제13조(의견진술)** ①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운전자는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주민신고제 단속기준(제9조 관련)

| 구 분         | 안전신문고(6대 불법 주·정차)                                                                                                                                                                                                                                                                                                                                                                                                                                                                                                                                                                                                                                                                                                                                                                                                                                                                                                                                                                                                                                                                              | 안전신문고(기타 불법주·정차)                                                                                                                                                                                                                                                                                                                                                                  |
|-------------|------------------------------------------------------------------------------------------------------------------------------------------------------------------------------------------------------------------------------------------------------------------------------------------------------------------------------------------------------------------------------------------------------------------------------------------------------------------------------------------------------------------------------------------------------------------------------------------------------------------------------------------------------------------------------------------------------------------------------------------------------------------------------------------------------------------------------------------------------------------------------------------------------------------------------------------------------------------------------------------------------------------------------------------------------------------------------------------------|-----------------------------------------------------------------------------------------------------------------------------------------------------------------------------------------------------------------------------------------------------------------------------------------------------------------------------------------------------------------------------------|
| 신 고 대 상 지 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li> <li>- 적색노면 표시 소방시설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li> </ul> </li> <li>※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li> <li>※ 교통안전표지 및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가 없는 소방시설은 기타 불법 주정차로 신고</li> <li>○ 교차로 모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li> <li>※ 교차로 모퉁이 중 아파트·건물 진입로는 불인정</li> </ul> </li> <li>○ 버스정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또는 노면 버스정차박스 내 침범의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li> </ul> </li> <li>○ 횡단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에 차량바퀴가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li> </ul> </li> <li>○ 어린이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 차량</li> </ul> </li> <li>○ 보도(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단, 인도와 사유지 일부 걸쳐 주정차한 차량이나 차도와 인도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에 주정차한 차량은 제외)</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색노면 표시구간(주·정차 금지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설물 정비 및 계도기간 중에 있는 구역은 신고대상지역 제외</li> </ul> </li> <li>○ 안전지대</li> <li>○ 교통안전표지와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가 없는 소방시설</li> <li>○ 이중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한 자동차 등에 연접하여 이중주차된 차량</li> </ul> </li> </ul> |
| 신 고 요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li> <li>○ 주변배경, 차량번호, 위반사실이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함(1차2차 사진에서 신고차량의 차체가 모두 찍혀야 함)</li> <li>○ 사진시차: 1분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정황 추가사진은 시차 간격 필요없음.</li> <li>※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야만 함</li> <li>※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는 불인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li> <li>○ 주변배경, 차량번호, 위반사실이 모두 식별 가능해야 함(1차2차 사진에서 신고차량의 차체가 모두 찍혀야 함)</li> <li>○ 사진시차: 5분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정황 추가사진은 시차 간격 필요없음.</li> <li>※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야만 함</li> <li>※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는 불인정</li> </ul> </li> </ul>               |

|                         |                                                                                                                                                                                                                      |                                                                                          |
|-------------------------|----------------------------------------------------------------------------------------------------------------------------------------------------------------------------------------------------------------------|------------------------------------------------------------------------------------------|
| <p>신고<br/>운영<br/>시간</p> | <p>○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 날)까지 신고</p> <p>○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br/>: 24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p> <p>○ 어린이보호구역<br/>: 평일 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p> <p>○ 보도(인도)<br/>: 07:00~21:00(11:00~14:00 제외)</p>                     | <p>○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 날)까지 신고</p> <p>○ 평일 07:00~21:00<br/>(평일 11:00~14:00, 주말, 공휴일 제외)</p> |
| <p>과태료<br/>금액</p>       | <p>○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승합차 130,000원)</p> <p>○ 6대 불법주정차 구역 소화전 80,000원(승합차 90,000원)</p> <p>○ 그 외 지역 40,000원(승합차 50,000원)</p> <p>※ 동일지역에서 동일차량을 반복신고하는 경우 무분별한 신고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p> |                                                                                          |

## 【별표 2】

**현장단속반 근무시간표(제12조제3항 관련)**

| 구 분 |    | 근무내용 | 근무시간        | 비 고                                                                                     |
|-----|----|------|-------------|-----------------------------------------------------------------------------------------|
| 주중  | 오전 | 현장근무 | 07:00~11:45 |                                                                                         |
|     |    | 내 근  | 11:45~12:00 | - 단속자료 정리, 특이사항 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
|     |    | 점심시간 | 12:00~13:00 |                                                                                         |
|     |    | 현장근무 | 13:00~14:45 | - 현장 계도                                                                                 |
|     |    | 내 근  | 14:45~15:00 | - 단속자료 정리, 특이사항 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
|     | 오후 | 현장근무 | 13:30~17:15 |                                                                                         |
|     |    | 내 근  | 17:15~17:30 | - 단속자료 정리, 특이사항 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
|     |    | 저녁시간 | 17:30~18:30 |                                                                                         |
|     |    | 현장근무 | 18:30~21:00 |                                                                                         |
|     |    | 내 근  | 21:00~21:30 | - 단속자료 정리, 특이사항 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
| 주말  | 오전 | 현장근무 | 09:00~11:00 |                                                                                         |
|     |    | 내 근  | 11:00~14:00 | - 단속 유예시간<br>- 현장 상황 확인 및 민원대기<br>- 단속자료 정리, 특이사항 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br>- 점심시간:12:00~13:00 |
|     | 오후 | 현장근무 | 14:00~16:40 |                                                                                         |
|     |    | 내 근  | 16:40~17:00 | - 단속자료 정리, 특이사항 확인,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

※ 근무시간은 차량 운행 여건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호우, 강설, 태풍 등 기상악화 및 각종 특보 발령 시, 지정된 장소에서 상황 호전 시까지 대기

## 【별표 3】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제13조제2항 관련)**

| 구 분                                      | 주요처리기준                                                                                                                                                                                                      | 구비서류                                                                                 |
|------------------------------------------|-------------------------------------------------------------------------------------------------------------------------------------------------------------------------------------------------------------|--------------------------------------------------------------------------------------|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 관련 공문서 등                                                                           |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br>○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br>○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br>※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 확인서                                                                  |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난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 서류                                                            |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br>○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br>○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                                          |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                                          | ○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 내역조치서                                                               |
|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
|                                          | ○ 공공(의정) 업무 수행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 직무 수행의 긴급성과 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외교, 영사, 국방, 긴급 현장 단속 및 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및 구호, 재난·재해 현장 긴급 출동 등)<br>※ 단순 행사 참석 등 사전 계획이 가능하여 긴급성이 없는 일정, 통상적 업무 협의, 회의 참석 등 일반 행정 업무 제외 | ○ 관련기관 공문서 및 출장신청서<br>(※ 긴급출동시: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 의정활동 확인서 및 현장활동 증빙자료 (민원상담일지, 현장 사진 등) |
|                                          |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br>※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 내역서 등                                                                |
|                                          | ○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br>※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 ○ 운송장 사본                                                                             |

※ 위 표의 구비 서류는 예시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43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

####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안 제15조제1항)

나. 조례 명칭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 주 소: (우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 전화번호: 032-880-4115 (FAX: 032-880-4853)

### 4. 붙임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나.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
| 의안<br>번호 | 2026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출인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1. 개정이유

2026. 10. 6.자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

##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원 개정(안 제15조제1항)

나. 조례 명칭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행정예고: 2026. 10. 12.(월)~ 10. 19.(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훈령 제 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u>10명</u> 이내로 구성한다.                                |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br>-----<br>----- <u>12명</u> -----<br>-----.                   |
|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18조(수당)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u>실비변상 조례</u>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br>-----<b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u>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br>--.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

☐ 작성자: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박 진

## 검 토 의 견 서

|         |                                                                                          |   |   |
|---------|------------------------------------------------------------------------------------------|---|---|
| 관련부서    | 총무과                                                                                      |   |   |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         | 검 토 내 용                                                                                  | 유 | 무 |
| 검토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br>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br>3.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br>5.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의 견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53호

## 지적기준점 성과(폐기)고시

2026년 미추홀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라 지적기준점을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순번 | 지적기준점 |      | 좌 표  |            |            | 소재지       | 설치연월일    | 현 황 |
|----|-------|------|------|------------|------------|-----------|----------|-----|
|    | 명칭    | 관리번호 | 구분   | X(m)       | Y(m)       |           |          |     |
| 1  | 지적도근점 | 276  | 세계좌표 | 540106.040 | 168448.370 | 10100-송의동 | 20180524 | 폐기  |
| 2  | 지적도근점 | 380  | 세계좌표 | 540223.190 | 168130.110 | 10100-송의동 | 20210517 | 폐기  |
| 3  | 지적도근점 | 503  | 세계좌표 | 539948.430 | 169055.130 | 10100-송의동 | 20180524 | 폐기  |
| 4  | 지적도근점 | 506  | 세계좌표 | 539957.250 | 169085.960 | 10100-송의동 | 20180524 | 폐기  |
| 5  | 지적도근점 | 1597 | 세계좌표 | 537707.100 | 171228.940 | 10300-학익동 | 20220923 | 폐기  |
| 6  | 지적도근점 | 1759 | 세계좌표 | 537609.890 | 171499.01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7  | 지적도근점 | 2278 | 세계좌표 | 537358.610 | 172005.000 | 10700-문학동 | 20190424 | 폐기  |
| 8  | 지적도근점 | 2280 | 세계좌표 | 537427.960 | 171950.910 | 10700-문학동 | 20190424 | 폐기  |
| 9  | 지적도근점 | 2435 | 세계좌표 | 540191.110 | 168115.210 | 10100-송의동 | 20210517 | 폐기  |
| 10 | 지적도근점 | 3013 | 세계좌표 | 540362.460 | 170537.060 | 10400-도화동 | 20180518 | 폐기  |
| 11 | 지적도근점 | 3015 | 세계좌표 | 540414.480 | 170608.670 | 10400-도화동 | 20180518 | 폐기  |
| 12 | 지적도근점 | 3016 | 세계좌표 | 540408.660 | 170624.900 | 10400-도화동 | 20180518 | 폐기  |
| 13 | 지적도근점 | 3021 | 세계좌표 | 540320.930 | 170669.120 | 10400-도화동 | 20180518 | 폐기  |
| 14 | 지적도근점 | 3022 | 세계좌표 | 540347.910 | 170691.360 | 10400-도화동 | 20180518 | 폐기  |
| 15 | 지적도근점 | 3026 | 세계좌표 | 540381.030 | 170722.680 | 10400-도화동 | 20180518 | 폐기  |
| 16 | 지적도근점 | 3093 | 세계좌표 | 540024.760 | 168261.590 | 10200-용현동 | 20190801 | 폐기  |
| 17 | 지적도근점 | 3181 | 세계좌표 | 539684.550 | 171697.120 | 10500-주안동 | 20190523 | 폐기  |
| 18 | 지적도근점 | 3208 | 세계좌표 | 538946.990 | 172798.810 | 10500-주안동 | 20190823 | 폐기  |
| 19 | 지적도근점 | 3220 | 세계좌표 | 541407.620 | 171021.130 | 10400-도화동 | 20190830 | 폐기  |
| 20 | 지적도근점 | 3241 | 세계좌표 | 539364.660 | 169486.61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1 | 지적도근점 | 3242 | 세계좌표 | 539379.080 | 169538.89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2 | 지적도근점 | 3243 | 세계좌표 | 539406.260 | 169631.04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3 | 지적도근점 | 3244 | 세계좌표 | 539449.450 | 169757.95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4 | 지적도근점 | 3245 | 세계좌표 | 539479.100 | 169742.20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5 | 지적도근점 | 3246 | 세계좌표 | 539510.870 | 169713.46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6 | 지적도근점 | 3261 | 세계좌표 | 539348.460 | 170164.88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7 | 지적도근점 | 3262 | 세계좌표 | 539294.150 | 170143.72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8 | 지적도근점 | 3263 | 세계좌표 | 539234.590 | 170117.97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29 | 지적도근점 | 3264 | 세계좌표 | 539174.450 | 170094.42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30 | 지적도근점 | 3273 | 세계좌표 | 539022.620 | 170474.09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       |      |      |            |            |           |          |    |
|----|-------|------|------|------------|------------|-----------|----------|----|
| 31 | 지적도근점 | 3332 | 세계좌표 | 539027.270 | 167818.77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32 | 지적도근점 | 3343 | 세계좌표 | 540227.540 | 172397.240 | 10500-주안동 | 20190830 | 폐기 |
| 33 | 지적도근점 | 3357 | 세계좌표 | 539067.990 | 170057.940 | 10200-용현동 | 20190830 | 폐기 |
| 34 | 지적도근점 | 3380 | 세계좌표 | 538516.500 | 168130.220 | 10200-용현동 | 20200422 | 폐기 |
| 35 | 지적도근점 | 3417 | 세계좌표 | 537515.680 | 167590.060 | 10300-학익동 | 20200422 | 폐기 |
| 36 | 지적도근점 | 3500 | 세계좌표 | 537681.300 | 170940.850 | 10300-학익동 | 20201120 | 폐기 |
| 37 | 지적도근점 | 3502 | 세계좌표 | 537652.380 | 171224.940 | 10300-학익동 | 20201120 | 폐기 |
| 38 | 지적도근점 | 3526 | 세계좌표 | 537950.160 | 171671.70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39 | 지적도근점 | 3527 | 세계좌표 | 537908.790 | 171688.67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0 | 지적도근점 | 3550 | 세계좌표 | 537596.740 | 172218.70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1 | 지적도근점 | 3553 | 세계좌표 | 537453.800 | 172205.95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2 | 지적도근점 | 3554 | 세계좌표 | 537348.820 | 172195.33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3 | 지적도근점 | 3555 | 세계좌표 | 537321.760 | 172193.68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4 | 지적도근점 | 3556 | 세계좌표 | 537292.400 | 172189.25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5 | 지적도근점 | 3558 | 세계좌표 | 537610.090 | 172032.50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6 | 지적도근점 | 3559 | 세계좌표 | 537629.930 | 171911.99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7 | 지적도근점 | 3560 | 세계좌표 | 537514.030 | 171902.20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8 | 지적도근점 | 3561 | 세계좌표 | 537645.700 | 171784.54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49 | 지적도근점 | 3563 | 세계좌표 | 537628.640 | 171664.27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50 | 지적도근점 | 3667 | 세계좌표 | 539619.700 | 172784.030 | 10500-주안동 | 20201120 | 폐기 |
| 51 | 지적도근점 | 3724 | 세계좌표 | 539022.980 | 171060.280 | 10500-주안동 | 20201120 | 폐기 |
| 52 | 지적도근점 | 3725 | 세계좌표 | 539017.620 | 171131.160 | 10500-주안동 | 20201120 | 폐기 |
| 53 | 지적도근점 | 3734 | 세계좌표 | 538952.730 | 171193.230 | 10500-주안동 | 20201120 | 폐기 |
| 54 | 지적도근점 | 3735 | 세계좌표 | 538905.330 | 171050.440 | 10500-주안동 | 20201120 | 폐기 |
| 55 | 지적도근점 | 3738 | 세계좌표 | 538883.410 | 171297.690 | 10500-주안동 | 20201120 | 폐기 |
| 56 | 지적도근점 | 3763 | 세계좌표 | 539045.470 | 169906.430 | 10200-용현동 | 20201120 | 폐기 |
| 57 | 지적도근점 | 3878 | 세계좌표 | 541439.581 | 170895.988 | 10400-도화동 | 20201120 | 폐기 |
| 58 | 지적도근점 | 3879 | 세계좌표 | 541421.136 | 171022.455 | 10400-도화동 | 20201120 | 폐기 |
| 59 | 지적도근점 | 4020 | 세계좌표 | 540510.960 | 169721.210 | 10100-송의동 | 20201120 | 폐기 |
| 60 | 지적도근점 | 4021 | 세계좌표 | 540524.090 | 169776.950 | 10100-송의동 | 20201120 | 폐기 |
| 61 | 지적도근점 | 4037 | 세계좌표 | 539000.500 | 168114.880 | 10200-용현동 | 20201120 | 폐기 |
| 62 | 지적도근점 | 4038 | 세계좌표 | 537582.580 | 171463.150 | 10700-문학동 | 20201120 | 폐기 |
| 63 | 지적도근점 | 4056 | 세계좌표 | 540299.460 | 168169.110 | 10100-송의동 | 20210315 | 폐기 |
| 64 | 지적도근점 | 4071 | 세계좌표 | 539009.550 | 170676.440 | 10500-주안동 | 20210111 | 폐기 |
| 65 | 지적도근점 | 4075 | 세계좌표 | 539060.920 | 170632.340 | 10500-주안동 | 20210111 | 폐기 |
| 66 | 지적도근점 | 4098 | 세계좌표 | 538884.360 | 170664.260 | 10500-주안동 | 20210111 | 폐기 |
| 67 | 지적도근점 | 4140 | 세계좌표 | 539369.930 | 169310.690 | 10200-용현동 | 20210111 | 폐기 |
| 68 | 지적도근점 | 4146 | 세계좌표 | 539433.210 | 169180.020 | 10200-용현동 | 20210111 | 폐기 |
| 69 | 지적도근점 | 4152 | 세계좌표 | 539540.780 | 169198.910 | 10200-용현동 | 20210111 | 폐기 |
| 70 | 지적도근점 | 4159 | 세계좌표 | 540000.050 | 169353.910 | 10100-송의동 | 20210111 | 폐기 |

|     |       |      |      |            |            |           |          |    |
|-----|-------|------|------|------------|------------|-----------|----------|----|
| 71  | 지적도근점 | 4165 | 세계좌표 | 540098.680 | 169361.130 | 10100-송의동 | 20210111 | 폐기 |
| 72  | 지적도근점 | 4167 | 세계좌표 | 540124.590 | 169431.070 | 10100-송의동 | 20210111 | 폐기 |
| 73  | 지적도근점 | 4168 | 세계좌표 | 540074.280 | 169510.150 | 10100-송의동 | 20210111 | 폐기 |
| 74  | 지적도근점 | 4195 | 세계좌표 | 539963.190 | 168859.800 | 10100-송의동 | 20210111 | 폐기 |
| 75  | 지적도근점 | 4225 | 세계좌표 | 537331.070 | 172027.490 | 10700-문학동 | 20210603 | 폐기 |
| 76  | 지적도근점 | 4226 | 세계좌표 | 537304.610 | 172053.120 | 10700-문학동 | 20210603 | 폐기 |
| 77  | 지적도근점 | 4236 | 세계좌표 | 537512.210 | 171769.950 | 10700-문학동 | 20210603 | 폐기 |
| 78  | 지적도근점 | 4293 | 세계좌표 | 540414.820 | 171422.450 | 10400-도화동 | 20211202 | 폐기 |
| 79  | 지적도근점 | 4294 | 세계좌표 | 540380.710 | 171416.060 | 10400-도화동 | 20211202 | 폐기 |
| 80  | 지적도근점 | 4329 | 세계좌표 | 539884.650 | 172258.35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1  | 지적도근점 | 4334 | 세계좌표 | 540396.360 | 172354.41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2  | 지적도근점 | 4335 | 세계좌표 | 540343.370 | 172352.98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3  | 지적도근점 | 4336 | 세계좌표 | 540340.220 | 172416.45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4  | 지적도근점 | 4338 | 세계좌표 | 539556.020 | 171691.69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5  | 지적도근점 | 4339 | 세계좌표 | 539549.580 | 171758.95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6  | 지적도근점 | 4342 | 세계좌표 | 539546.240 | 171864.220 | 10500-주안동 | 20211202 | 폐기 |
| 87  | 지적도근점 | 4362 | 세계좌표 | 539529.760 | 172551.370 | 10500-주안동 | 20220504 | 폐기 |
| 88  | 지적도근점 | 4364 | 세계좌표 | 539540.250 | 172789.160 | 10500-주안동 | 20220504 | 폐기 |
| 89  | 지적도근점 | 4547 | 세계좌표 | 539348.710 | 170165.860 | 10200-용현동 | 20221101 | 폐기 |
| 90  | 지적도근점 | 4622 | 세계좌표 | 540294.210 | 170807.920 | 10400-도화동 | 20220927 | 폐기 |
| 91  | 지적도근점 | 4735 | 세계좌표 | 538361.390 | 168283.670 | 10200-용현동 | 20230712 | 폐기 |
| 92  | 지적도근점 | 4919 | 세계좌표 | 539294.610 | 171855.860 | 10500-주안동 | 20230919 | 폐기 |
| 93  | 지적도근점 | 4920 | 세계좌표 | 539214.520 | 171855.820 | 10500-주안동 | 20230919 | 폐기 |
| 94  | 지적도근점 | 4923 | 세계좌표 | 539287.320 | 172031.400 | 10500-주안동 | 20230919 | 폐기 |
| 95  | 지적도근점 | 4929 | 세계좌표 | 539739.590 | 172123.860 | 10500-주안동 | 20230919 | 폐기 |
| 96  | 지적도근점 | 4930 | 세계좌표 | 539673.180 | 172118.720 | 10500-주안동 | 20230919 | 폐기 |
| 97  | 지적도근점 | 4948 | 세계좌표 | 540328.770 | 170854.160 | 10400-도화동 | 20230921 | 폐기 |
| 98  | 지적도근점 | 4991 | 세계좌표 | 539535.770 | 172790.370 | 10500-주안동 | 20230710 | 폐기 |
| 99  | 지적도근점 | 4992 | 세계좌표 | 539604.190 | 172789.930 | 10500-주안동 | 20230710 | 폐기 |
| 100 | 지적도근점 | 4993 | 세계좌표 | 539771.020 | 172757.840 | 10500-주안동 | 20230710 | 폐기 |
| 101 | 지적도근점 | 4995 | 세계좌표 | 539791.160 | 172540.680 | 10500-주안동 | 20230710 | 폐기 |
| 102 | 지적도근점 | 5268 | 세계좌표 | 539353.460 | 171859.030 | 10500-주안동 | 20240327 | 폐기 |
| 103 | 지적도근점 | 5306 | 세계좌표 | 539286.410 | 172106.780 | 10500-주안동 | 20240403 | 폐기 |
| 104 | 지적도근점 | 5308 | 세계좌표 | 539193.000 | 172102.700 | 10500-주안동 | 20240403 | 폐기 |
| 105 | 지적도근점 | 5309 | 세계좌표 | 539138.020 | 172098.960 | 10500-주안동 | 20240403 | 폐기 |
| 106 | 지적도근점 | 5329 | 세계좌표 | 540547.670 | 169149.830 | 10100-송의동 | 20240522 | 폐기 |
| 107 | 지적도근점 | 5331 | 세계좌표 | 540528.350 | 169113.530 | 10100-송의동 | 20240522 | 폐기 |
| 108 | 지적도근점 | 5449 | 세계좌표 | 539340.200 | 172236.080 | 10500-주안동 | 20250616 | 폐기 |
| 109 | 지적도근점 | 5483 | 세계좌표 | 540095.730 | 169648.800 | 10100-송의동 | 20250924 | 폐기 |

※ 지적도근점 폐기 109점, 표지재질 : 철재

| 기 준 원 점 명                                                                                                                                                                                                         | 세계측지원점                                |
|-------------------------------------------------------------------------------------------------------------------------------------------------------------------------------------------------------------------|---------------------------------------|
| 측량성과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 032-880-4257) |
| <p>- 지적기준점은 토지경계 분쟁 방지와 그 해결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각종 시설 등의 공사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재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032-880-4257)로 문의바랍니다.</p> |                                       |

##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631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명                                        | 주관부서  |
|--------------------------------------------------|-------|
|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실   |
|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지원과 |
|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정책과 |
|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보전과 |
|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보전과 |
|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생과   |
|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토지정보과 |
|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 총무과   |
|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                           | 총무과   |
| 10.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재무과   |
| 11.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세무1과  |
|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 보육정책과 |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39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7.~2026. 10. 31.
- 공공장소: 미추홀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송달사유 |
|-----|----------------------|--------------------------|--------|------|
| 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 과태료 266,500원<br>※ 가산금 포함 | 교육 미이수 | 등기반송 |

### 5. 공고내용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함을 알립니다.
- 다.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032-880-4406)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41호

##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안내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2026. 10. 22. (15일간)
3. 공고대상 : 불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2026년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이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분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행하시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반납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소·정지) 및 제4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  
(미추홀구 독정리로95, ☎032-880-4593)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2026년 건설기계조종면허증 정기적성검사(2차) 등기우편 반송 |                  |             |         |                     |               |      |
|------------------------------------|------------------|-------------|---------|---------------------|---------------|------|
| 연번                                 | 면허번호             | 수취인         | 수취인우편번호 | 주소                  | 적성검사 종료일      | 배달결과 |
| 1                                  | 인천172016*****    | X*** *****O | 2214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                                  | 인천262016*****    | 가*현         | 222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                                  | 인천172016*****    | 강*동         | 221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                                  | 경기2e2016*****    | 강*구         | 221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                                  | 서울182007*****    | 강*구         | 2218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                                  | 충남112016*****    | 강*국         | 2224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                                  | 인천172016*****    | 고*건         | 221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                                  | 인천172016*****    | 고*준         | 2218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                                  | 인천142016*****    | 고*군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송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                                 | 인천182016*****    | 고*만         | 222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                                 | 충북122021*****    | 고*준         | 221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염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                                 | 인천172016*****    | 곽*용         | 221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                                 | 인천20-2016-0***** | 권*형         | 222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                                 | 인천17-2016-0***** | 권*호         | 2215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                                 | 전북122016*****    | 권*훈         | 2216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                                 | 인천182016*****    | 권*덕         | 2215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                                 | 경기232016*****    | 권*성         | 2219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                                 | 인천142016*****    | 권*민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수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                                 | 경기252016*****    | 금*하         | 222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                                 | 경기882006*****    | 김*민         | 2215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                                 | 인천172016*****    | 김*민         | 221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                                 | 인천262016*****    | 김*삼         | 221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                                 | 인천112016*****    | 김*호         | 2214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                                 | 인천172016*****    | 김*중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                                 | 인천172021*****    | 김*용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6                                 | 인천172016*****    | 김*완         | 222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7                                 | 인천172016*****    | 김*정         | 2219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8                                 | 인천172016*****    | 김*홍         | 2224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9                                 | 인천172016*****    | 김*경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0                                 | 인천172016*****    | 김*용         | 2215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1                                 | 인천232016*****    | 김*희         | 22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2                                 | 인천172013*****    | 김*찬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3                                 | 광주062016*****    | 김*현         | 2220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4                                 | 인천202016*****    | 김*현         | 2216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5                                 | 인천171983*****    | 김*하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6                                 | 인천141977*****    | 김*석         | 222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7                                 | 인천202016*****    | 김*준         | 222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8                                 | 인천182016*****    | 김*호         | 2215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39                                 | 인천172016*****    | 김*수         | 222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0                                 | 인천202016*****    | 김*기         | 222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                  |     |       |                     |               |      |
|----|------------------|-----|-------|---------------------|---------------|------|
| 41 | 인천17-2016-0***** | 김*식 | 2224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2 | 인천172016*****    | 김*철 | 222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3 | 인천172016*****    | 김*훈 | 221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4 | 인천282016*****    | 김*준 | 221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5 | 인천172016*****    | 김*희 | 2219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6 | 서울212016*****    | 김*수 | 2216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7 | 인천242016*****    | 김*환 | 2217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8 | 인천171991*****    | 김*구 | 22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49 | 인천172016*****    | 김*은 | 2217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0 | 강원082016*****    | 김*수 | 222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1 | 인천182016*****    | 김*현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2 | 인천142007*****    | 김*길 | 22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3 | 인천17-2016-0***** | 김*노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4 | 인천202016*****    | 김*산 | 22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북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5 | 인천172016*****    | 김*준 | 2217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6 | 인천232016*****    | 김*석 | 2215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7 | 광주052016*****    | 김*식 | 2217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8 | 인천20-2016-0***** | 김*연 | 2213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59 | 인천172016*****    | 김*태 | 22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0 | 인천262016*****    | 김*준 | 221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1 | 인천172016*****    | 김*성 | 2218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2 | 인천14-2016-0***** | 김*규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3 | 인천182016*****    | 김*훈 | 2215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4 | 서울182016*****    | 김*중 | 221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5 | 세종112016*****    | 김*빈 | 222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6 | 충남192013*****    | 김*겸 | 222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7 | 강원15-2016-0***** | 김*실 | 2217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8 | 인천232016*****    | 김*완 | 2216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69 | 인천182016*****    | 김*웅 | 2215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0 | 인천172021*****    | 김*원 | 22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1 | 인천172016*****    | 김*은 | 2217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2 | 인천112016*****    | 김*환 | 2216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3 | 인천202016*****    | 김*철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4 | 서울18-2016-0***** | 김*현 | 221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5 | 인천172016*****    | 김*웅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6 | 서울191998*****    | 김*현 | 2218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7 | 인천18-2016-0***** | 김*진 | 2213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8 | 경기152016*****    | 김*경 | 22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79 | 인천142016*****    | 김*중 | 22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0 | 인천172016*****    | 김*슬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                  |     |       |                     |               |      |
|-----|------------------|-----|-------|---------------------|---------------|------|
| 81  | 인천172016*****    | 김*혁 | 2218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2  | 인천172016*****    | 김*수 | 221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3  | 인천202016*****    | 김*식 | 2224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4  | 경기152021*****    | 김*식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5  | 인천182016*****    | 김*태 | 2215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남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6  | 인천182016*****    | 남*용 | 221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7  | 인천172016*****    | 류*만 | 2224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송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8  | 서울172016*****    | 류*훈 | 2218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89  | 인천202016*****    | 류*현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송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0  | 인천172016*****    | 류*수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수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1  | 인천172016*****    | 문*상 | 2216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2  | 인천262016*****    | 문*영 | 221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3  | 인천282021*****    | 문*식 | 2218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4  | 인천262016*****    | 박*용 | 222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5  | 인천202016*****    | 박*호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송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6  | 경기052016*****    | 박*준 | 2218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7  | 인천172011*****    | 박*기 | 222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8  | 인천26-2016-0***** | 박*선 | 221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99  | 인천172011*****    | 박*혁 | 22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0 | 인천172016*****    | 박*범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1 | 인천202016*****    | 박*영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2 | 인천172016*****    | 박*신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3 | 인천262016*****    | 박*주 | 221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4 | 충남102016*****    | 박*일 | 2216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5 | 인천17-2016-0***** | 박*일 | 2218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6 | 인천142016*****    | 박*현 | 221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7 | 인천262016*****    | 박*일 | 22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8 | 인천142016*****    | 박*일 | 221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09 | 충남102016*****    | 박*창 | 221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0 | 인천172016*****    | 박*민 | 221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1 | 인천172010*****    | 박*철 | 221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2 | 인천202016*****    | 박*현 | 221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 2026. 12. 31. | 반송불요 |
| 113 | 경기922016*****    | 박*진 | 221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4 | 인천202016*****    | 박*수 | 2218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5 | 인천232016*****    | 박*보 | 2219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6 | 인천20-2016-0***** | 방*일 | 221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7 | 경기05-2016-0***** | 배*운 | 2215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8 | 인천172016*****    | 배*을 | 2215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19 | 인천172011*****    | 백*현 | 222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0 | 경남202015*****    | 백*운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                  |     |       |                    |               |      |
|-----|------------------|-----|-------|--------------------|---------------|------|
| 121 | 인천172016*****    | 백*공 | 2213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2 | 인천172016*****    | 서*수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3 | 경기2c2016*****    | 서*희 | 22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4 | 경기051991*****    | 서*선 | 222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5 | 인천282016*****    | 성*제 | 221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6 | 인천262016*****    | 성*민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7 | 부산192016*****    | 손*호 | 2216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반송불요 |
| 128 | 인천172015*****    | 손*범 | 222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29 | 인천202016*****    | 송*훈 | 2224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0 | 인천172016*****    | 신*식 | 2216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1 | 인천262016*****    | 신*희 | 2210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2 | 인천172016*****    | 신*혁 | 22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3 | 인천232016*****    | 신*정 | 2218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 | 2026. 12. 31. | 반송불요 |
| 134 | 인천172016*****    | 신*복 | 2218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5 | 인천172016*****    | 신*수 | 22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6 | 울산142016*****    | 신*석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7 | 충남102016*****    | 심*형 | 221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8 | 인천262016*****    | 안*현 | 221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39 | 인천172016*****    | 안*직 | 222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0 | 인천172016*****    | 안*문 | 2218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1 | 경기902016*****    | 엄*훈 | 22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2 | 인천202016*****    | 엄*환 | 2213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3 | 서울172016*****    | 오*주 | 222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4 | 인천172011*****    | 오*삼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5 | 인천20-2016-0***** | 유*재 | 2215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6 | 인천262016*****    | 유*완 | 221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7 | 인천232016*****    | 유*원 | 2219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8 | 인천172016*****    | 유*균 | 2218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49 | 인천172016*****    | 유*재 | 221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0 | 인천182016*****    | 유*섭 | 2213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1 | 인천262021*****    | 유*신 | 2220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2 | 인천172016*****    | 윤*주 | 221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3 | 인천172016*****    | 윤*수 | 222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4 | 인천172021*****    | 윤*옥 | 22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5 | 인천242016*****    | 윤*재 | 221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6 | 인천182016*****    | 미*민 | 222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7 | 서울152016*****    | 미*식 | 22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8 | 인천24-2016-0***** | 미*엽 | 2216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59 | 인천242016*****    | 미*철 | 2215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0 | 서울162016*****    | 미*희 | 221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1 | 서울22-2016-0***** | 미*정 | 2215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2 | 충남102016*****    | 미*훈 | 222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3 | 인천172016*****    | 미*배 | 221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4 | 인천172016*****    | 미*경 | 222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5 | 경기24-2016-0***** | 미*재 | 2214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6 | 인천172016*****    | 미*준 | 221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7 | 경기242016*****    | 미*진 | 2218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8 | 인천17-2015-0***** | 미*엽 | 22229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69 | 충남272016*****    | 미*일 | 221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0 | 인천172016*****    | 미*용 | 222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                  |     |       |                     |               |      |
|-----|------------------|-----|-------|---------------------|---------------|------|
| 171 | 경북132016*****    | 미*영 | 222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2 | 경기202016*****    | 미*광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3 | 인천172016*****    | 미*옥 | 2210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4 | 인천172015*****    | 미*재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5 | 대구092016*****    | 미*훈 | 2210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천년로***  | 2026. 12. 31. | 반송불요 |
| 176 | 인천202016*****    | 미*연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7 | 인천172016*****    | 미*국 | 2215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8 | 인천172016*****    | 미*호 | 222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남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79 | 인천202016*****    | 미*기 | 2214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0 | 인천172005*****    | 미*희 | 2223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1 | 인천202016*****    | 미*성 | 221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2 | 인천172016*****    | 미*수 | 2216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3 | 인천17-2016-0***** | 미*민 | 2218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4 | 인천172014*****    | 미*석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5 | 인천172016*****    | 미*혁 | 2217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6 | 인천172016*****    | 미*희 | 2215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7 | 인천172016*****    | 미*수 | 221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8 | 서울212016*****    | 미*혁 | 222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89 | 충북122016*****    | 미*철 | 2212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0 | 인천172014*****    | 미*희 | 2223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1 | 인천182016*****    | 미*길 | 2215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2 | 인천172016*****    | 미*선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3 | 인천172016*****    | 미*성 | 2216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4 | 인천172015*****    | 임*길 | 221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5 | 인천112016*****    | 임*운 | 2220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남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6 | 대전142016*****    | 임*원 | 2213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7 | 인천172016*****    | 임*진 | 2216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8 | 인천172016*****    | 임*식 | 2217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199 | 경기2016*****      | 장*옥 | 2217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0 | 경기2016*****      | 장*석 | 2213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1 | 인천202016*****    | 전*식 | 2220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2 | 인천172016*****    | 전*영 | 221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3 | 인천172016*****    | 전*길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4 | 인천172016*****    | 전*우 | 222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5 | 인천172016*****    | 정*록 | 22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6 | 인천142016*****    | 정*수 | 2218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7 | 인천182008*****    | 정*희 | 2216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08 | 인천172016*****    | 정*수 | 221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 2026. 12. 31. | 반송불요 |
| 209 | 인천182016*****    | 정*식 | 222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0 | 인천182016*****    | 정*현 | 2215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                  |     |       |                        |               |      |
|-----|------------------|-----|-------|------------------------|---------------|------|
| 211 | 경기052016*****    | 정*규 | 222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2 | 서울152016*****    | 정*정 | 2223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3 | 인천182016*****    | 정*환 | 22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4 | 인천172016*****    | 정*봉 | 2219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5 | 인천172016*****    | 정*철 | 221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6 | 인천18-2016-0***** | 정*욱 | 222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7 | 인천17-2021-0***** | 정*덕 | 2218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8 | 인천182016*****    | 정*병 | 2218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19 | 인천172016*****    | 정*행 | 222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0 | 인천172016*****    | 정*훈 | 2213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1 | 인천26-2016-0***** | 정*민 | 22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2 | 서울072016*****    | 조*희 | 2223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3 | 인천202016*****    | 조*진 | 2218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4 | 인천172016*****    | 조*휘 | 2219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5 | 부산202016*****    | 조*현 | 2217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6 | 인천172016*****    | 주*리 | 222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7 | 인천171994*****    | 지*일 | 2218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8 | 인천18-2016-0***** | 지*호 | 222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29 | 인천172016*****    | 진*하 | 221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0 | 인천172016*****    | 진*범 | 222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1 | 인천172016*****    | 차*덕 | 222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2 | 인천232016*****    | 차*철 | 2218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3 | 인천262016*****    | 채*휘 | 222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125번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4 | 충남112016*****    | 천*희 | 2218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5 | 인천232016*****    | 천*수 | 2216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431***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6 | 인천172016*****    | 최*수 | 2217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7 | 인천262016*****    | 최*규 | 222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8 | 인천18-2016-0***** | 최*두 | 2223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146번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39 | 인천112016*****    | 최*열 | 2216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0 | 인천172011*****    | 최*건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1 | 인천172016*****    | 최*기 | 2214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2026. 12. 31. | 반송불요 |
| 242 | 인천172016*****    | 최*길 | 22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3 | 경기242016*****    | 최*용 | 221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4 | 경남342016*****    | 최*용 | 2217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5 | 인천172016*****    | 최*림 | 2214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6 | 울산272016*****    | 최*근 | 2218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7 | 인천172016*****    | 최*호 | 221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8 | 인천262016*****    | 최*인 | 2222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49 | 인천172011*****    | 한*준 | 2216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0 | 인천18-2016-0***** | 한*성 | 22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속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                  |     |       |                       |               |      |
|-----|------------------|-----|-------|-----------------------|---------------|------|
| 251 | 경기242016*****    | 한*익 | 2222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2 | 인천172012*****    | 한*태 | 22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3 | 인천172016*****    | 한*우 | 222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4 | 인천172016*****    | 한*성 | 221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5 | 인천172016*****    | 허*혁 | 2215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6 | 경기242016*****    | 홍*우 | 221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7 | 인천172016*****    | 홍*호 | 222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8 | 충남132016*****    | 홍*호 | 221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59 | 인천17-1973-0***** | 황*주 | 2218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11번길***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60 | 인천172016*****    | 황*하 | 2213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 261 | 서울152011*****    | 황*원 | 2219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2026. 12. 31. | 폐문부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2호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7.~2026. 10. 31.
2. 공고장소: 미추홀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                                                                             |                          |                             |      |          |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기술인 이수기한(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                          |                             |      |          |
| 당 사 자         | 성 명                                                                         | 김〇〇                      |                             |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〇〇〇(용현동) |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반내용: 건설기술인 이수기한(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교육·훈련 미이수<br>○ 교육종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                          |                             |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과태료 200,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br>※ 자진납부 기한 만료 시 과태료 250,000원으로 본부과 됩니다. |                          |                             |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br>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                          |                             |      |          |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부서명)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건설과)             |      |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3층(송의동) | 전화번호 | 880-4406 |
|               |                                                                             | 전자우편주소                   | choimw36@korea.kr           | 팩스번호 | 880-4874 |
|               | 제출기한                                                                        |                          | 2026년 10월 31일까지             |      |          |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급에서 3급까지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과태료 미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4조에 따라 고지서 납부기한 내 미납된 과태료는 과태료 금액의 3% 가산금이 징수됩니다.</li> <li>- 체납된 과태료 미납부시에는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징수됩니다.</li> </ul> </li> </ul>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과태료 자진납부: 미추홀구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건설과(☎032-880-4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45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공고기간: 2025. 10. 8. ~ 10. 22.(14일간)

□ 공고내용

|                 |     |                                                                                                                                                                                                                                                                                  |        |                         |    |              |
|-----------------|-----|----------------------------------------------------------------------------------------------------------------------------------------------------------------------------------------------------------------------------------------------------------------------------------|--------|-------------------------|----|--------------|
| 1. 처분의 제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 부과 처분 사전통지                                                                                                                                                                                                                                 |        |                         |    |              |
| 2. 당사자          | 성 명 | 남 * 기                                                                                                                                                                                                                                                                            | 주민등록번호 | 610804-*****            |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76번길 **, ***호                                                                                                                                                                                                                                                      |        |                         |    |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 201호 외 256호<b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 위반                                                                                                                                                                                                   |        |                         |    |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차):<br><b>금6,267,595,430원(금육십이억육천칠백오십구만오천사백삼십원)</b>                                                                                                                                                                                                        |        |                         |    |              |
|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b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        |                         |    |              |
| 6. 고지내용         |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제6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에서 불구하고 현재까지 등기 되어있지 않아 이행강제금(2차)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하오니,<br>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2차)부과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7. 기타(문의처)      |     | 제<br>출<br>처                                                                                                                                                                                                                                                                      | 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    |              |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송의동) |    |              |
|                 |     |                                                                                                                                                                                                                                                                                  | 연락처    | 032-880-4239            | 팩스 | 032-880-486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52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제6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등기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목: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
3.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23. 이후
4. 공고대상

| 차량번호      | 소유자 | 이해관계내용 | 이해관계인 | 송달지             | 송달불가사유 |
|-----------|-----|--------|-------|-----------------|--------|
| 인천80거8549 | 김*남 | 저당권자   | 박*선   | 인천광역시<br>계양구 ** | 폐 문부재  |

5. 공고내용: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5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2026. 10. 31.
3. 공고대상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
| 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 교육 미이수 | 폐문부재 | 250,000원 |

### 4. 공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에는 매월 1.2% 최대 60개월까지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미추홀구(건설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032-880-4406)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66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15일간)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설치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 처분<br>종류 | 성명                                 | 송달 주소                                   | 과태료         | 반송 사유 | 등기번호                | 위반내용                                          |
|----------|------------------------------------|-----------------------------------------|-------------|-------|---------------------|-----------------------------------------------|
| 독촉<br>고지 | (가칭) 동암역<br>지역주택조합<br>추진위원회<br>김*영 | 인천광역시 부평구<br>아트센터로 4*번길<br>3 4*1호 (십정동) | 금4,944,000원 | 폐문부재  | 14417-0603<br>-6185 | 옥외광고물 등의<br>관리와 옥외광고산업<br>진흥에 관한 법률<br>제3조 위반 |

## 7.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 8.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유동옥외광고물담당(032-880-4986)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64호

##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사 항: 사유재산 변상금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 게시
4. 공시송달 대상자 무단점유 현황

| 성명  | 위치            | 점유면적  | 점유기간             | 사전통지액    | 비고 |
|-----|---------------|-------|------------------|----------|----|
| 이*희 | 학익동 산94-1 외 1 | 26.1㎡ | 2026.1.1.~12.31. | 13,480원  |    |
| 이*덕 | 학익동 산86       | 480㎡  | 2026.1.1.~12.31. | 313,370원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032-880-5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